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가합105765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의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박용주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일, 이동훈, 장석준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승진
변 론 종 결 2020. 5. 19.
판 결 선 고 2020. 8. 18.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3,444,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9.부터 2020. 8.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 원고에게, 피고 B는 309,551,843원, 피고 C는 206,751,10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피고 B는 원고에게 53,832,9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B는 2018. 7. 3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9. 3. 31. 퇴직하였다. 피고 C는 원고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8. 12. 31.경 퇴직하였다.

나. 피고 B와 D은 원고의 주식을 50%씩 소유하면서 원고 회사를 경영하였다.

다. 피고 C는 2016. 5.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미처분이익 처분관련 기안(이하 '이 사건 기안'이라 한다)을 하였고, 당시 사내이사인 D이 2016. 6. 1.,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 B가 2016. 7. 6. 승인하였다.

1. 법인자금 절세 인출관련 하여 조치사항입니다.

2) 퇴직금(3배수) : 퇴직금 정관변경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3배수 변경 (2018년 3월 임원 중임변경 등기시 정관변경 예정)

2. 1-1) DC퇴직연금을 활용코자 했으나 아니하고 1-2) 퇴직금(3배수)를 적극 활용하여 미처분이익을 처분합니다.

1) 1-2) 퇴직금(3배수) 인원 선정

* 대상자 : B 대표이사, D 이사, C 부장

2) 1-2) 퇴직금(3배수) 준비 : 급여인상

2016년 6월 급여부터 기본급 1,500,000원 급여 인상[매년 정기연봉인상도 함(상한금 1,200,000원 한도내)]

* 인상자 : B 대표이사, D 이사, C 부장

3. 급여인상분 산출근거

1) 2016년 5월 31일 미처분이익 : ₩1,359,413,482

2) 처분간편계산 [조건: 5년간 적자 없음 (당기 손익계산서 -6천 시 당기순이익 ZERO 개년임)]

① 급여5년간 ₩300,000,000(2021년 6월 30일): 연간 ₩60,000,000(₩20,000,000/인 *3인)

② 배당5년간 ₩192,500,000(2020년12월31일)

③ 퇴직금 : 정관변경 2018년 3월 이후에는 퇴직금(3배수)로 언제든지 가능함

[예상재원 17억 원 : 미처분 이익(8억) + 부동산(8억) + 기타(1억)]

④ 퇴직연금 : 퇴직금(3배수)에 포함한다.

3) 대상자3인 : 연간 ₩ 60,000,000(₩20,000,000/인 *3인) : 1,500,000원*13개월 =19,500,000원(퇴직연금 포함)

라. 1) 원고는 2018. 3. 30.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7년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을 주주 전원의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2) 원고는 2018. 3. 30. 정관을 개정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43조 (임원의 보수, 퇴직금, 상여금, 유족위로금)

②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별지2에 의한다.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4조 (임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

① 임원의 퇴직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퇴직 전 3년 평균임금(기본금 + 상여금) × 1/10 × 지급배수 × 재직 연수로 한다.

② 임원퇴직금의 지급배수는 다음과 같다.

직급	지급배수
대표이사	3
이사	3
감사	3

③ 임원 퇴직금 지급은 연간 보수한도와는 별도로 집행한다.

마. 피고 B와 D은 2018. 12.경 정산기준금액을 1,020,000,000원으로 하고, 임원퇴직금 3배수 382,997,984원, 퇴직연금 73,446,141원을 별도로 한 다음 양도양수기준금액을 613,136,409원으로 하여 피고 B의 지분 50%를 D에게 양도하는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바. 1)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퇴직금을 390,556,421원(=퇴직연금 81,004,578원 + 퇴직일시금 309,551,843원)으로 산정하였고, 그 중 1억 6,000만 원을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였다.

2)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퇴직금을 252,266,550원(퇴직연금 55,994,345원 + 퇴직일시금 196,272,205원)으로 산정하였고, 그 중 8,000만 원을 피고 B의 동의를 받고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가)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

피고 B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피고들이 모의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자신들의 부당한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고가 적자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으면 세금 부담 등이 크므로 적자상태에서 이를 처분해야 한다고 속여서 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을 형해화 할 정도의 거액을 피고들의 퇴직금으로 처리하기로 계획하고 퇴직 직전인 2018. 3.경 갑자기 임원 퇴직금 정관을 3배수로 변경하였고, 또한 피고들이 2018. 4.경 퇴사 직전 D 몰래 원고 영업의 핵심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권과 유일한 부동산 등의 회사 자산을 타에 헐값에 팔아넘김으로써 자신들이 정산받을 이익을 남겨 퇴직연금과 별도로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에 따른 임원보수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 C는 원고가 도입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의무가입대상자로서 피고 C에 대한 부담금을 매달 납부하였으므로 별도의 퇴직일시금을 수령할 근거가 없으며, 자본충실원칙에 위반한 정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피고 B는 309,551,843원, 피고 C는 196,272,20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횡령금

피고 C는 피고 B의 친동생, 관리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들 중 매월 9만 원 상당의 티머니 충전을 요청하여 이를 현금화하여 10,478,900원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피고 B가 일시퇴직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수령한 309,551,843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를 대신하여 대납한 소득세 53,832,941원을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원고의 미처분이익 처분 방안으로 퇴직금 3배수를 지급하는 방안은 2015년 경부터 준비되었고, 피고 C도 원고 회사 초기 발전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포함되었으며, 2016년 이 사건 기안에 D과 피고 B가 모두 승인하였고, 다만 정관변경을 2018. 3.경 하기로 하였을 뿐이다. 실제 퇴직금 지급은 피고 B의 지분 정산 형태로 이루어졌고, D도 퇴직금 3배수를 수령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원고가 피고 C의 퇴직금 194,272,205원을 인식하고 피고 C의 동의를 받아 상계를 하기까지 하였다.

2) 피고 C의 티머니 사용은 원고로부터 허가를 받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용한 것이고, 대부분 회사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횡령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청구액 중에는 10년이 경과한 충전액도 포함되어 있어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퇴직금에 관하여

가) 피고 B에 대하여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사의 보수에는 퇴직금도 포함되는바, 이사의 퇴직금은 그 액수뿐만 아니라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정관 또는 그 위임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나 주주총회에서 채택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B에 대하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3배수의 퇴직금 지급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원고 전체 주주인 피고 B와 D이 동의하여 개정한 것이고, 이미 2016년 경 원고의 미처분이익 처분에 대하여 동의한 뒤 2018. 3. 30.경 정관의 개정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2016. 5. 31. 기준으로 원고의 미처분 이익이 약 13억 원으로 이를 급여 및 배당, 퇴직금 3배수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② 원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3배수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과도한 퇴직금이라거나 원고의 자본충실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 B 뿐만 아니라 원고의 50% 주주로서 이사인 D의 경우도 2019. 3. 31. 기준으로 3배수의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도 피고 B의 퇴직금 3배수가 309,551,843원임을 전제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1억 6,000만 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에서는 퇴직금의 최저기준 '계속근로년수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다른 방법으로 다양하게 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 중 법정퇴직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히 무

효과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이에 대하여 피고 C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C에 3배수의 퇴직금 지급을 한 것은 원고와 합의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기안에 따라 피고 C를 급여 인상, 3배수의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원고의 50% 주주이자 사내이사 D, 당시 원고의 50% 주주이자 대표이사 피고 B가 이를 승인하였고, 2016. 6.경부터 피고 C의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하였다.

② 원고가 피고 C를 위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고 하여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이를 초과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상 별도의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③ 실제 원고는 피고 C의 퇴직정산금(3배수 퇴직금)이 196,272,205원임을 전제로 피고 C의 동의를 받아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 1억 6,000만 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다.

2) 피고 C의 횡령금에 관하여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2018. 4.경부터 2018. 12. 경까지 합계 10,478,900원의 티머니를 충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C가 위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퇴직소득 관

련하여 가불금정산금과 퇴직소득 진행하여 퇴직소득세가 산출되어지면 원천징수신고자 원고에게 입금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2019. 7. 26.경까지 피고 B의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합계 53,444,550원(=퇴직소득세 48,548,980원 + 지방소득세 4,895,57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위 퇴직소득세 합계 53,444,5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납부한 퇴직소득세가 53,832,941원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인 퇴직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여 발생한 납부대행수수료 388,391원(=240,000원 + 148,391원)을 포함한 것이므로 위 수수료 부분을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53,444,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 5. 19.부터 피고 B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8.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일
-----	----	-----

	판사	정진우
--	----	-----

	판사	장유진
--	----	-----